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182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김성기의원

찬 성 자 심현정, 이창열, 빅춘희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붕해체 정의를 취지에 맞게 재정의(안 제2조관련)

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에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서 '건축물'로 변경하여 비주택(창고, 축사)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안 제5조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3. 8. 23.~ 2023. 8. 31. 아래표 참조.

조례안	검토안(환경과)	의회 의견
<p>제2조(정의)</p> <p>2. “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여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원안 수용</p> <p>(단, 지원내용이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폐기물처리”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2호의 <u>“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여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u>를 <u>“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말한다”</u>로 개정 필요</p>	<p>[수용]</p>
	<p>- 기타</p> <p>가. 별지 1호서식의 지원신청내용란 개정 필요 (슬레이트 철거, 주택 철거 →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p> <p>나. 별지 2호서식의 사업구분란 개정 필요 (슬레이트 철거, 주택 철거 →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p>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여 교체하는 경우”를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폐기물처리”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
거하는 건축물

3. 주거용 건축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

---- 건축물의 경우

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
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지
붕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1. 6. 22.>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

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5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지원대상을 주거용 건축물에서 슬레이트 건축물(비주택 포함)로 변경)

2. 비용 추계결과(비주택 관련)

가. 추계의 전제

- 개정 전 : 216,000천원(5,400천원/동 * 40동)
- 개정 후 : 216,000천원(5,400천원/동 * 40동)

나. 추계 결과

- 의존재원 : 40동 * 3,240천원/동 = 129,600천원
- 자체수입 : 40동 * 2,160천원/동 = 86,4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환경과장 전원표
연락처	(033) 330-23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보조금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